

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 안 번 호	791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8.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의하여 군 및 읍면의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·공제제도의 가입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(안 제2조)
- 나. 보험·공제의 가입(안 제3조)
- 다. 보험료의 지급(안 제4조)
- 라.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(안 제5조)
- 마.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: 보험·공제등에의 가입
-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 : 경상남도 행정 12130 - 10184(2003. 1. 28)

○ 입법예고

- 고성군조례·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)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· 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군수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- 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